

제 호

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

교육기관명:

소재지:

설치자(법인은 대표자):

교육기관의 장: (생년월일: . .)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10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

직인

변경사항		
변경일	변경내용	기록자 (서명 또는 인)